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4.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10월 13일

나.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 책무(안 제3조)

❍ 창의·인성교육의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이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 연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차별됨이 없이, 창의·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창의력과 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창의·인성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

발의년월일: 2017년 10월 일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관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 책무(안 제3조)

다. 창의·인성교육의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진로교육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